

#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8-제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 : 2008. 2.

발 의 자: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일치와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안의 반영,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조항을 보완 및 신설하며,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의 반영

가. 「지방자치법」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치(안 제1조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11조)

다.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의 보완 및 신설(안 제9조, 안 제9조의2)

라.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 등의 정비(안 제1조 내지 제3조, 안 제9조,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붙임

나. 기 타

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” 를 “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” 로 한다.

제1조 중 「지방자치법」 “제36조” 를 “제41조” 로 “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5, 제19조의2” 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52조” 로,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간중 7일이내” 를 “기간 중 7일 이내” 로, 같은 항 및 제3조제5항 중 “승인을 얻어” 를 “승인을 받아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3분의1이상” 을 “3분의 1이상” 으로, 제4항 중 “휴회중” 을 “휴회 중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법 “제104조 내지 제107조” 를 “제113조 내지 제116조” 로, “당해 지방자치단체의” 를 “사천시” 로, 법 “제108조 및 제111조” 를 “제117조 및 120조” 로, 제3호 중 “시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단” 을 “사천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” 으로, 제4호 중 법 “제95조제2항” 을 “제104조제2항” 으로, 제5호 중 “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” 를 “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4” 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법 “제36조제3항” 을 “제41조제3항” 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3일전” 을 “3일 전” 으로, 제2항 중 “소속 지방자치단체” 를 “사천시” 로, “응하여야” 를 “따라야” 로, 제3항 중 “응할 수 없는” 을 “따를 수 없는” 으로, “1일전” 을 “1일 전” 으로, 제4항 중 “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” 를 “의장은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” 로, 제5항은 이를 삭제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과태료 부과 절차 등)

-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 2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사실통보에 의하여 시장(이하 “부과권자”라 한다)이 부과 징수한다.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③ 부과권자는 제9조제4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의한 처리 결과를 60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별지 1 내지 별지 3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위반 행위의 사실과 이의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부과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4의 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

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⑥ 그 밖의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1조 중 법 “제36조제4항” 을 “제41조제4항” 으로, “기타의” 를 “그 밖의” 로, “사천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” 를 “「사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」” 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“제36조제3항” 을 각각 “제41조제3항” 으로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응하여야” 를 “따라야” 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기타의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한다.

제19조 및 제20조 중 “사천시의회회의규칙” 을 각각 “「사천시의회 회의 규칙」” 으로, 제20조 중 “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” 를 “「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」” 로 한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하며 다음에 별표 2 및 별지 1 내지 4를 신설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명</b> <u>사천시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</u></p>	<p><b>제명</b> <u>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</u></p>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36조 및 <u>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5 제19조의2</u>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의 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에 관한 절차, <u>기타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----- <u>제41조</u> --- <u>같은법시행령 제52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.</p>
<p><b>제2조(감사) ①</b>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<u>기간</u> 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<b>제2조(감사) ①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기간</u> 중 <u>7일</u> 이내----- ----- ----- <u>승인을</u> 받아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조(조사) ①</b> 의회는 재적의원 <u>3분의1이상</u>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의회가 폐회 또는 <u>휴회중일</u>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, 조사할 사안의 범위, 조사방법, 조사일정,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<u>승인을</u>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.</p>	<p><b>제3조(조사) ①</b> -----<u>3분의 1이상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휴회</u> 중 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<u>승인을</u> 받아-----.</p>

<p>⑥ ~ ⑦ (생략)</p> <p><b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</p> <p>3. 시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단</p> <p>4.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</p> <p>5.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, 공단외의 출자·출연법인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⑥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 제113조 내지 제116조----- 사천시 ----- 제117조 및 제120조----- -----</p> <p>3. 사천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</p> <p>4. ---- 제104조제2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5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4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</b>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</b> ① ----- ----- ----- 제41조제3항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</b>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를</p>	<p><b>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</b> ① ----- ----- -----</p>



	<p>술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 2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사실통보에 의하여 시장(이하 “부과권자”라 한다)이 부과 징수한다.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부과권자는 제9조제4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의한 처리 결과를 60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별지 1 내지 별지 3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위반 행위의 사실과 이의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</p> <p>⑤ 부과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4의 서식에 의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⑥ 그 밖의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
<p>제11조(증인 실비보상)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사천시의회에서 증인 등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.</p>	<p>제11조(증인 실비보상) -- 제41조4항-----</p> <p>-----그 밖의-----</p> <p>-----「사천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」-----</p> <p>-----.</p>



< 현행 >

【별표】

< 개정 >

【별표 1】

## 선 서

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.

년 월 일

증인 :

인

**【별표 2】**

(단위 : 만원)

위 반 사 항	위반회수	과 태 료	비 고
○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	3회 이상	500	·불출석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.  ·증언(진술)거부 1회는 1일중의 증언(진술) 거부를 말한다.
	2회	200	
	1회	100	
○ 증언(진술) 전체거부	3회 이상	400	
	2회	200	
	1회	100	
○ 증언(진술) 일부 거부	3회 이상	200	
	2회	100	
	1회	50	

[별지 1]

제 호

수 신

제 목 : 과태료 처분 통지

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「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

가. 위반일시 : . . . . .

나. 위반내용 :

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「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의 의거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3.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첨 부 : 과태료 납부통지서1부.

년 월 일

사 천 시 장

[별지 2]

과태료 납부통지서  
(개인통지용)

과태료 납부서  
(수납은행 보관용)

영수증 통지서  
(시청 통보용)

영수증 통지서  
(개인 보관용)

제 호	회계년도	년도	제 호	회계년도	년도	제 호	회계년도	년도	제 호	회계년도	년도
세입과목			세입과목			세입과목			세입과목		
납 부 의무자	성 명		납 부 의무자	성 명		납 부 의무자	성 명		납 부 의무자	성 명	
	주 소			주 소			주 소			주 소	
과태료금액			과태료금액			과태료금액			과태료금액		
위의 과태료는 「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가까운 은행(관내전금융기관)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사 천 시 장			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. 년 월 일 수납은행 :			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. 년 월 일 수납은행: 사 천 시 장			위의 금액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사 천 시 장		

[별지 3]

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			
납부 의무자	성명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
	주소		
납부통지서번호			
위 반 사 항			
과 태 료 금 액			당초납부기한
<p>위의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하오니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까지 납부처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 납 부 처 :</p> <p>※ 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년    월    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사    천    시    장</p>			

[별지 4]

<b>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</b>				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과태료처분내역	고지받은일자		납부통지서번호	
	납부기한		과태료금액	
	과태료처분사유			
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				
<p>「지방자치법」 제27조제3항 및 「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신청인 :       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 margin-left: 50px;"><b>사천시장</b>    귀하</p>				

## 관 계 법 령 발 취

### <지방자치법>

**제113조 (직속기관)**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**제114조 (사업소)**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115조 (출장소)**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116조 (합의제행정기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117조 (하부행정기관의 장)**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, 읍에 읍장, 면에 면장, 동에 동장을 둔다.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

말한다.

**제120조 (하부행정기구)**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.

**제137조 (수수료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